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대상

제1·2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



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(FMS)

<https://www.fms.or.kr>

시스템 문의: 1588-8788

※ 제3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절차 안내 사항 리플릿은 FMS 홈페이지 [이용안내]-[자료실]-[기타] 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시설물안전법 대상 제1·2종시설물

■ 제1·2종시설물이란?

▪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·터널·항만·댐·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,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, 시설물안전법 또는 법) 제7조(시설물의 종류)에 따른 제1·2종 시설물

▪ 제1·2종 시설물의 대상범위 요약

※ 상세종류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[별표 1] 참고

구분	대상 범위
제 1 종 시설물	가. 고속철도 교량,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.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,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.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. 다목적댐, 발전용댐,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.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. 하구둑,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. 광역상수도, 공업용수도,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
제 2 종 시설물	가.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. 고속국도, 일반국도,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.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.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.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다중이용 용도별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.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.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

■ 제1·2종시설물 안전관리절차 (의무 이행사항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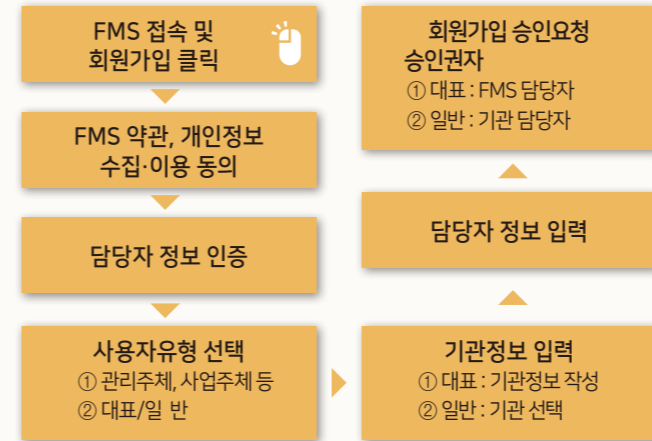
의무사항 결과제출을 위한 FMS 사용자 등록

모든 사용자

준공전

■ FMS 사용자 등록 절차

▪ 제1·2종시설물의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 등은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(시설물관리대장 제출, 설계도서 제출, 시설물관리계획 제출, 안전점검등 결과 제출 등) 이행을 위해 FMS ID 발급



※ 대표/일반 구분미 없는 경우 FMS담당자로 승인요청

▪ 각 메뉴별 상세 매뉴얼
· FMS [이용안내]-[FMS 매뉴얼]-[항목별 상세 매뉴얼]

1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및 등록

사업주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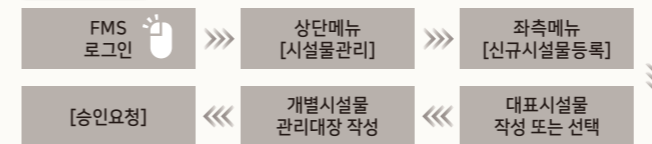
준공전

▪ 제1·2종시설물을 건설·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관리주체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

관련법령 법 제9조, 영 제6조 및 규칙 제6조 등

제출시기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

제출방법



※ 사업주체는 제출된 시설물관리대장 정보를 해당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이관하여야 함.

2

설계도서 등 제출

사업주체/
인허가기관

준공전/후

▪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·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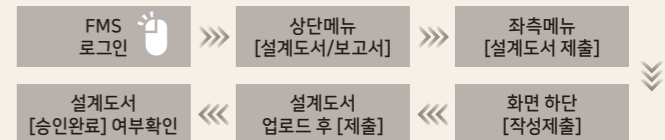
관련법령 및 제출시기

▪ 법 제9조, 영 제6조 및 규칙 제6조 등 [영 별표2, 규칙 별표 1]

구분	종류	제출의무자	제출시기
설계 도서 등	가. 준공도면 나.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다. 구조계산서 라.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	사업주체	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, 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·보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	감리 보고서	사업주체	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
안전점검 종합보고서	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01조에 따라 제출	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	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

※ PDF, TIF(CCITT Group4) 형식으로 제출가능, [이용안내] - [항목별 상세 매뉴얼] 참고

제출방법



3

시설물관리계획 제출

관리주체

2월15일까지

▪ 기본계획*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연단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(시설물관리계획**)을 수립

*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1029호 참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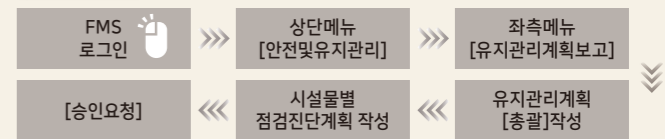
** 유지관리 조직·인원·장비 등, 시설물 점검진단·보수보강계획 등

※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은 5년 단위 중기관리계획을 SOC 성능평가시스템 제출

관련법령 법 제6조, 영 제3조 및 규칙 제3조 등

제출시기 매년 2월 15일까지 FMS를 통해 제출 (준공 다음연도부터 제출)

제출방법



※ 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계획제출

4 안전점검등 결과 제출

관리주체
실시완료
30일 이내

■ 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출

-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(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) 및 정밀 안전진단(제1종시설물은 의무)을 실시
-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
-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 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

관련법령 법 제11~13조 및 제17조, 영 제8~13조 등

의무사항 제1, 2종시설물 대상 안전점검등

구분	실시 의무대상 유무		관련조항
	제1종시설물	제2종시설물	
정기안전점검	대상	대상	법 제11조
정밀안전점검	대상	대상	
정밀안전진단	대상	필요 시	법 제12조
긴급안전점검	필요 시	필요 시	법 제13조

실시시기 영 [별표 3]

안전등급	정기안전점검	정밀안전점검		정밀안전진단
		건축물	건축물 외 시설물	
A등급	반기에	4년에 1회 이상	3년에 1회 이상	6년에 1회 이상
B·C 등급	1회 이상	3년에 1회 이상	2년에 1회 이상	5년에 1회 이상
D·E 등급	1년에 3회 이상*	2년에 1회 이상	1년에 1회 이상	4년에 1회 이상

* 해빙기 전(2·3월), 우기 전(5·6월), 동절기 전(11·12월) 각 1회 이상

제출시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를 통해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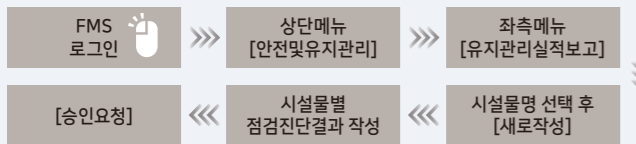
■ 긴급안전점검 결과 제출

-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·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

관련법령 법 제13조, 영 제11조 등

제출시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를 통해 제출

■ 안전점검등 제출방법



※ 대행의뢰한 경우 대행업체가 결과제출 후 관리주체가 승인

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 자격

-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관리주체의 소속직원이 있는 경우 안전점검(정기 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) 및 긴급안전점검 자체수행 가능
- 단, 정밀안전진단은 자체수행 불가
- 영 [별표 5]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책임기술자 자격

구분	기술자적격요건	교육요건
정기안전 점검	가.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토목, 건축 또는 안전관리(건설안전)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일 것 나. 건축사	· 해당분야(토목, 건축 분야)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
정밀(긴급) 안전점검	가.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토목, 건축 또는 안전관리(건설안전)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일 것 나. 건축사(5천제곱미터 이상시설물의 설계·감리실적이 있을 것)	· 해당분야(토목, 건축 분야)의 정밀(긴급)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
정밀안전 진단	가.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토목, 건축분야의 특급기술자 이상일 것 나. 건축사(5천제곱미터 이상시설물의 설계·감리실적이 있을 것)	· 해당분야(교량 및 터널, 수리, 항만, 건축 분야)의 정밀안전 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을 것
성능평가	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(교량 및 터널, 수리, 항만, 건축 분야)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	

* '19.1.1 이후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 교육이수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제 수행기간 2년 이상일 것

* '20.8.21 이후 안전점검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FMS에 등록된 기술자 일 것

- 단,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같음 가능

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

- 안전점검등(정기·정밀·긴급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) 및 성능평가를 관련 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
- 단일 시설물의 점검·진단 범위를 분리하여 대행업체에 발주·수행불가
- 법 제27조(하도급 제한 등)에 의한 대행업체의 하도급만 가능

대행가능범위 법 제26조, 제40조, 영 제16조, 제28조

구분	정기안전 점검	정밀(긴급) 안전점검	정밀안전 진단	성능평가
안전진단 전문기관*	가능(분야별 등록업체)			
유지관리업체**	가능(책임기술자 보유 시)			불가

* 안전진단전문기관: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

** 유지관리업체: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9조에 따라 등록된 유지관리업자

※ 안전진단전문기관/유지관리업체는 [FMS]- [관련업체]에서 검색 가능

■ 여기서 잠깐! 대행 시 제한사항이 있나요?

- 하자담보책임기간 전 시행하는 마지막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행의뢰 하여야하며, **아래 업체에 의뢰불가**
- 해당 시설물을 설계·시공·감리한 자 또는 계열회사
-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

5

성능평가 결과 제출

관리주체
실시완료
30일 이내

■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이란?

- 제1·2종시설물 중 도로, 철도, 항만, 댐 등 시설물안전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정해진 시설물

-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대상범위 요약
- ※ 상세종류는 영 [별표 13] 참고

구분	대상 범위
교량 및 터널	1종·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, 일반국도, 고속철도, 일반철도의 교량 및 터널
항만	1종·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
댐	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다목적댐
건축물	1종·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
하천	1종·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하구둑, 방조제, 수문 및 통문, 제방
상수도	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
옹벽 및 절토사면	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, 일반국도, 고속철도, 일반철도의 옹벽 및 절토사면

■ 성능평가 실시 및 제출시기

-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성능평가를 실시

관련법령 법 제40조, 영 제28조

실시시기 성능평가 최초 실시 이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실시

제출시기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SOC성능평가시스템을 통해 제출

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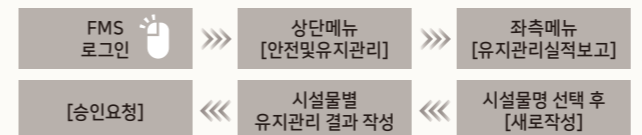
유지관리 결과 제출

관리주체
실시완료
30일 이내

의무사항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·보강을 시행한 경우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FMS를 통해 제출

관련법령 법 제41조, 영 제29조

FMS 제출방법



7

안전취약시설물 등 조치결과 제출

관리주체
조치단계별
완료 시

■ 중대한결함등 계획 및 조치결과 제출

의무사항 중대한결함등*이 발생한 경우 사용제한,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2년 이내 보수·보강 등 조치착수,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를 완료하여 FMS를 통해 결과 제출

* 중대한결함등

- ①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
- ②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

※ 안전점검을 수행한 자는 중대한결함등을 발견 시 관리주체,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함

관련법령 법 제22조~제25조, 영 제18조~20조 등

■ 안전 취약시설물(D,E 등급) 조치결과 제출

의무사항 점검결과 긴급한 보수·보강이 필요하거나 **긴급한 조치**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**사용제한, 위험표지 설치** 및 주민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FMS를 통해 결과 제출

관련법령 법 제16조, 제23조~제25조 등

■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공지

의무사항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안전취약시설물(D,E 등급)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위험표지*를 설치하고, 방송·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지

* 규칙 별표4 위험표지 규격 필수

관련법령 법 제25조, 영 제20조 및 규칙 제21조 등

8

시설물 사고 정보 입력

관리주체
사고발생
15일 이내

-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법 제58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FMS에 사고 정보 입력

관련법령 법 제58조, 영 제37조

제출방법

